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

제품•시각•인터렉티브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					
계	수 요 자	상 호: 사업자번호: 주 소: 전화 번호: 대 표 자:			
약		상 호:			
자	공 급 자	사업자번호 : 주 소: 전화 번호: 대 표 자:			
계	용역명				
	설치(납품)장소				
약	계약금액				
	계약보증금	계약금액의 15%			
내	계약기간	계약체결일 ~			
<u> </u>	지체상금율	매1일당 계약금액의 2.5 /1000(0.25%)			
	기타사항	별지			

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와 계약상대자는 위 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l임서류 1.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.					
2.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.					
3. 과업지시서 1부.					
4. 산출내역서 1부.					
	2014				
		n — 1	(12)		
수 요 자:		대표자	(인)		
공 급 자:		대표자	(인)		

디자인용역계약 일반조건

- 000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"수요자"이라 칭하고 000를 "공급자"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- 제1조(계약 목적) 본 계약은 "수요자"와 "공급자"사이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(계약문서) 계약문서는 계약서, 유의서, 과업지시서, 용역계약일반조건, 용역계약특수조건, 산출내역 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계약보증금) ①"공급자"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"수요자"에게 귀속한다.
 -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"공급자"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"수요자" 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4조(선급금) 선급금은 "공급자"의 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·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(행정자치부 예규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- 제5조(착수 및 보고) "공급자"가 용역을 착수할 때에는 용역공정예정표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, 기타 "수요자"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"수요자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검사) ①"공급자"는 계약종료일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검사를 위하여 "수요자"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"공급자"는 용역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.
- 제7조(대금결제) 용역대가는 "수요자"의 검사를 필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후 "공급자"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제8조(계약이행상의 감독) "수요자"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.
- 제9조(지체상금) ①"공급자"는 정한 기한 내에 완성을 아니하고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"수요자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(단, "수요자"의 사정으로 인한 완성일 연기는 제외함)
 - ②"수요자"는 지체상금을 "공급자"의 용역대금 지급금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.
- 제10조(계약변경 사항의 통보) "공급자"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내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"수요자"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) ①"공급자"가 계약조건을 성실히 수행 하지 않을 때 "수요자"는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.
 - ②"공급자"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·형사상의 손해 및 용역상의 하자 사유에 의하여 "수요자"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제12조(비밀유지) ①"공급자"는 본 계약의 내용, 본 계약의 수행으로 얻은 "수요자"에 관한 정보 및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"공급자"가 이를 위반하여 "수요자"가 손해를 입은 경우 "수요자"는 "공급자"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.
- 제13조(권리양도) "공급자"는 "수요자"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 제14조(협약서) "수요자"와"공급자"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 협약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제15조(중재) 본 계약의 관련하여 "수요자"와 "공급자"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방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해결하고, 당사자 간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, 이에 따른 소송은 "수요자"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행한다.

디자인용역계약 특수조건

- 제1조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,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.
- 1. '계약서'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,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 첨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.
- 2. '수요자의 콘텐트'란 최종인도물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, 정보, 사진, 인쇄물 등 수요자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.
- 3. '중간인도물'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(제시)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.
- 4. 최종시안'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.
- 5. '최종인도물'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.
- 6. '지식재산권'이라 함은 「저작권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

산권을 의미한다.

- 7. '사전작업물'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콘셉트, 디자인 시안 등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,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.
- 8. '제3자의 창작물'은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의 지식재산 (사진, 일러스트레이션, 기호 등)을 의미한다.
- 9. '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'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자체, 기호, 도화, 삽화 등을 의미한다.

제2조(지식재산권 귀속 등)

- ①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,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.
- ②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된 공급자의 중간인도물, 사전작업물, 최종인도물의 개별구성요 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, 수요자는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.
- ③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트는 수요자의 소유이며,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수요자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실시가 공급자의 중간인도물, 사전작업물, 최종인도물의 개별 구성요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의 사용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⑤ 제3자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최종인도물의 구성에 필요한 제3자 창작물의 내용과 사용비용 등을 고지하고,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.

제3조(감액 또는 환수)

- ① 계약 체결 후 제안서 및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, 준공검사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및 관계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감사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이 있을 경우 등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서 산정하는 금액을 이 용역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.
- ② 계약종결 후에 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환수통보에 의하여 계약상대방(이하 "계약자"

라 한다)이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, 재단과 서울시 및 다른 관서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타 지급 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.

③ 위 환수 통보 시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재단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계약의 해지 등)

- ①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(이하 "해지 등"이라 한다)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 일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 하고,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 재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5조(계약의 해석)

-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.
- ② 이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.

제6조(계약금액의 변경)

① 사업내용 변경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계약 금액이 10%이상 변경 시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